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1937 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7.

라. 회부일자 : 2024. 5. 30.

## 2. 제안이유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징수대상시설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위 치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규 모	연장 3.5km, 왕복 4차로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영업소	1개소	2개소(금천, 선암)
개통일시	2014.11.21.	2016.7.3.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규 모	연장 7.53km 왕복4차로	연장 10.33km 왕복4차로
영업소	1개소	1개소
개통일시	2021.4.16.	2021.9.1.

나. 통행료 인상내역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최초 (‘14.11.21)	현재	2024년	최초 (‘16.7.3)	현재 (2024년)	2024년
소 형	1,500	1,700 (‘23.7.1)	1,700	1,600	1,800 (‘23.7.1)	1,900
중 형	2,500	2,600 (‘20.4.1)	2,900	2,800	2,900 (‘20.4.1)	3,200
대 형	3,200	3,300 (‘20.4.1)	3,800			

구 분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최초 (‘21.4.16)	현재	2024년	최초 (‘21.9.1)	현재	2024년
소 형	2,400	2,600 (‘23.7.1)	2,700	2,500	2,700 (‘23.7.1)	2,800

※ 경차 : 50% 할인 적용.

다. 통행료의 산출기초

-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붙임-2 참조)

라. 징수기간 : 2024.07.01.부터

마. 통행료 징수방법 :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ETCS)징수 방식 혼용

바.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붙임-4 참조)

사.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 붙임-5 참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나. 예산조치 : 통행료 인상 연기('24.4월→'24.7월)에 따른 2025년 약24억원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동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024.7.1일부터 적용할 인상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sup>1)</sup>에 따라 회의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금회 요금인상안을 살펴보면 ‘용마터널’ 중형차량 300원(2,600원→2,900원) 및 대형차량 500원(3,300원→3,800원), ‘강남순환로’ 소형차량 100원(1,800원→1,900원) 및 중형차량 300원(2,900원→3,2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 소형차량 100원(2,600원→2,7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 소형차량 100원(2,700원→2,800원)을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표] 참조).

[표] 금회 통행료 인상안 내역

(단위 : 원/대, VAT포함)

민자도로	소형			중형			대형		
	현재	인상안 (‘24.7.1.)	증감	현재	인상안 (‘24.7.1.)	증감	현재	인상안 (‘24.7.1.)	증감
용마터널	1,700 (‘23.7.1)	1,700	-	2,600 (‘20.4.1)	2,900	+300	3,300 (‘20.4.1)	3,800	+500
강남순환로	1,800 (‘23.7.1)	1,900	+100	2,900 (‘20.4.1)	3,200	+300			
신월여의지하도로	2,600 (‘23.7.1)	2,700	+100						
서부간선지하도로	2,700 (‘23.7.1)	2,800	+100						

※ 경차 : 50% 할인 적용

1)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먼저, ‘용마터널’의 경우 ‘14.11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500원, 중형차량 2,500원, 대형차량 3,200원으로 결정된 후 ‘20.4.1일에 소형차량을 제외하고 중형차량 2,600원, 대형차량 3,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되었고 ‘23.7.1일에는 소형차량만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된 바 있으며,
- ‘강남순환로’의 경우는 ‘16.7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600원, 중형차량 2,800원으로 결정된 후 ‘20.4.1일에 소형차량 1,700원, 중형차량 2,9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되었으며 ‘23.7.1일에는 소형차만 1,8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음.
- 다음으로, ‘21년 4월과 9월에 각각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량 전용도로로서 최초 통행료가 2,400원과 2,500원으로 결정된 후 ‘23.7.1일에 2,600원과 2,7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인상되었음(〔표〕 참조).
- 금회 통행료 인상안 중 용마터널의 중형(+300)과 대형(+500) 및 강남순환로의 중형(+300)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것은 ‘23.7.1일자 인상 시 인상대상에 제외하고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 이번 통행료 인상안은 각각의 실시협약조건<sup>2)</sup>에 따른 것으로, 기준 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시점부터 2023.12월말까지의

2) ‘용마터널’ 제31조, ‘강남순환로’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제47조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 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임(〔표〕 참조).

[표] 2024년 통행료 산정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중형	대형	소형	중형	소형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A)		1,700. <sup>00</sup>	2,200. <sup>00</sup>	1,067. <sup>48</sup>	1,814. <sup>72</sup>	1,862. <sup>00</sup>	1,923. <sup>66</sup>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B)		171. <sup>45</sup> %		177. <sup>06</sup> %		146. <sup>34</sup> %	144. <sup>25</sup> %
'24년	산정통행료(C)	2,914. <sup>82</sup>	3,772. <sup>86</sup>	1,890. <sup>09</sup>	3,213. <sup>16</sup>	2,724. <sup>93</sup>	2,774. <sup>92</sup>
	적용통행료(D)	2,900	3,800	1,900	3,200	2,700	2,800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통행료 산정 : (A) × (B) = (C),

(C) → (D)

- 통행료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3조제3항3)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근거하여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 제47조, 서부간선지하도로 실시협약 제47조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 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됨.

[표] 실시협약 상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관련 조항

용마터널 실시협약('18.6.8.)	강남순환로 실시협약('14.12.10.)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제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제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의 변경으로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조정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신월여의지하도로(舊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14.5.9.)	서부간선지하도로('15.3.11.)
<p>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u>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u>,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p> <p>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p>	<p>제 47 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u>최초통행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u>,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직전 연도 통행료에 직전 연도 통행료 산정 기준일로부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한다.</p> <p>④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p> <p>⑤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또는 감소한 통행료는 차기년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p>

- 따라서 금회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통행료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법 및 협약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실시협약상 통행료 인상은 필요시 원칙적으로 4월 1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금회 인상안은 7월 1일로 3개월을 연기한 것인데,

- 이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24.1.4일 발표한 “2024 경제 정책 방향”에서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통행료 인상을 연기한 3개월(‘24.4월→‘24.7월) 동안의 미인상분은 21억 56백만원([표] 참조)으로 차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재정으로 지원될 예정임.

[표] 통행료 인상 3개월 연기에 따른 ‘25년 재정지원 예상액

구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합계
미인상분 (‘24.4.1~7.1.)	32백만원	1,247백만원	467백만원	410백만원	2,156백만원 (‘25년 지급 예정)

- 이처럼 통행료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경우 미인상분을 시 재정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민자도로가 지향하는 이용자부담원칙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국 통행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민자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은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 따라서, 그간 통행료 미인상 또는 인상연기로 인한 재정지원금액(‘24년 기준)이 121억원([표] 참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는 그 타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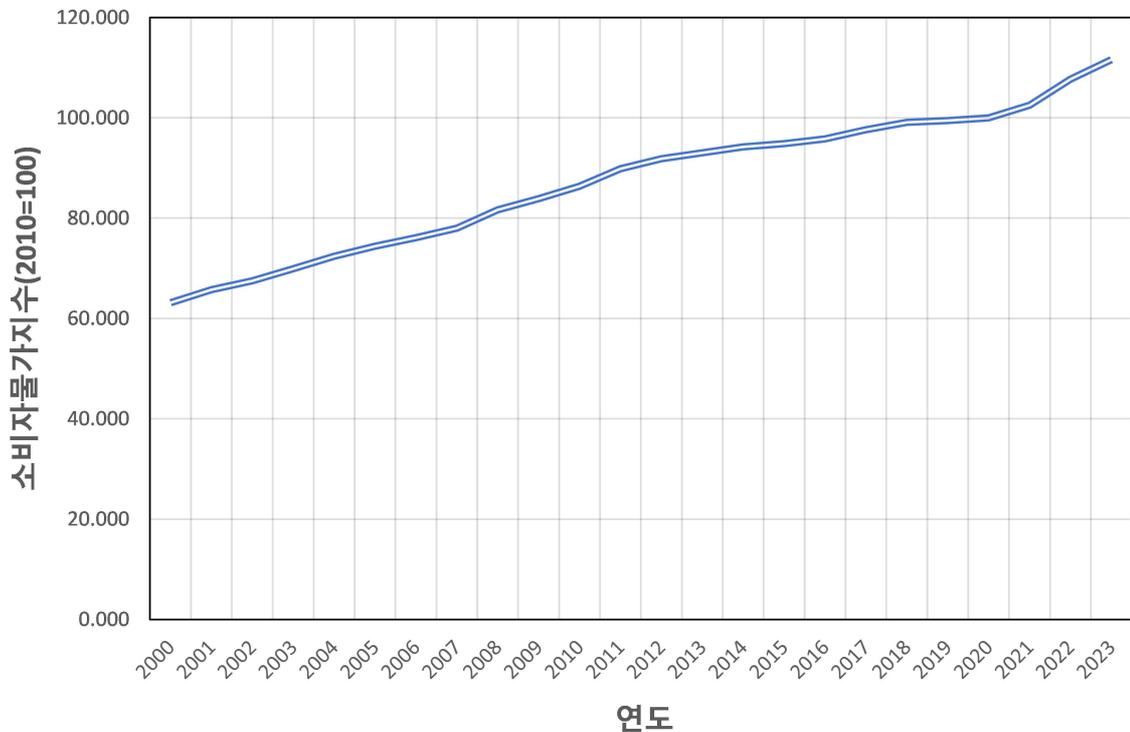
[표] 통행료 미인상 또는 인상연기('19년~'23년)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

구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재정지원금액
'19	미인상 <sup>1)</sup> (中·大) (38백만원)	미인상 <sup>2)</sup> (小·中) (4,260백만원)	-	-	4,298백만원 ( '20년 지급)
'20	인상 (中·大)	인상 (小·中)	-	-	
'21	미인상 <sup>1)</sup> (大) (12백만원)	-	'21.4.16.개통	'21.9.1.개통	12백만원 ( '23년 지급)
'22	미인상 <sup>3)</sup> (小·中·大) (1,075백만원)	미인상 <sup>3)</sup> (中) (112백만원)	미인상 <sup>3)</sup> (1,647백만원)	미인상 <sup>3)</sup> (1,546백만원)	7,850백만원 ( '24년 지급)
'23	인상연기 (小) ( '23.4월→7월) (539백만원)	인상연기 (小) ( '23.4월→7월) (1,241백만원)	인상연기 ( '23.4월→7월) (888백만원)	인상연기 ( '23.4월→7월) (802백만원)	
합 계					12,160백만원

- 1) 용마터널 미인상('19, '21) : 소형 통행료와 인상시기 맞추어 인상시기를 조정
- 2) 강남순환로 미인상('19) : PIMAC 자금제조달 검토결과를 반영을 위해 인상시기를 조정
- 3) 미인상('22)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인상시기를 조정. 중·대형차량은 상대적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고, 물류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통행료 미인상

## ■ 종합의견

- 금회 인상안은 용마터널(중형, 대형)과 강남순환로(중형)의 경우 '20년 통행료 인상 이후 3년 만에,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는 '23년 통행료 인상 이후 1년 만에 해당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과 협약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그림)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 자명함.



[그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여건 및 그에 따른 공공요금 정책 등의 상황에 따라 시가 재정 보전의 방법으로 인상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자도로 운영의 이용자부담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차기 조정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준 잠재적 인상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살펴보면,
- 금회 인상시기를 서울시가 당초 협약상 제시된 4월 1일자가 아닌 7월 1일자로 3개월 연기하여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시 인상시기는 협약상 4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만일에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시기를 부득이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인상에 따른 시 재정보전의 재원 주체인 일반시민 또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겨지므로

- 금회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금년 2월말 직후에 인상시기를 7월 1일자로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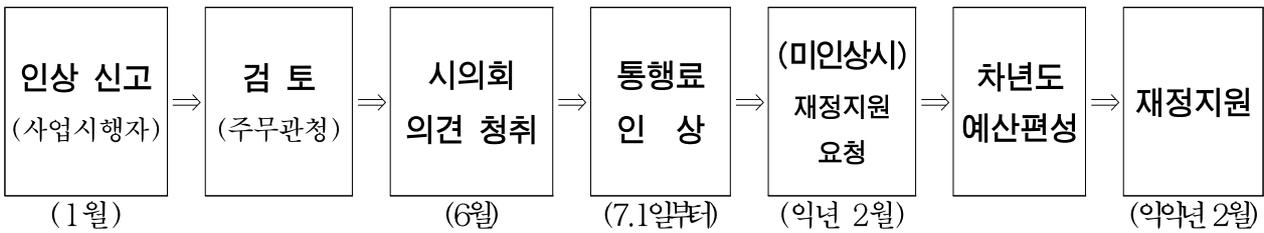
[붙임]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서울시)

**붙임**

##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

### 1. 통행료 인상 절차 및 산정방법

○ 인상 절차



○ 통행료 산정방법(100원 단위 절상 또는 절하)

- 통행료 = 기준 통행료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2. 2024년 통행료 산출내역

**【용마터널】**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1.4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71.45%, 중형·대형 차종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000. <sup>00</sup>	1,700. <sup>00</sup>	2,200. <sup>00</sup>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71. <sup>45</sup> %		
'01.04월 소비자물가지수*		65. <sup>74</sup>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sup>71</sup>		
2024년	산정통행료	1,714. <sup>48</sup>	2,914. <sup>82</sup>	3,772. <sup>86</sup>
	적용통행료	1,700	<b>2,900</b>	<b>3,800</b>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 【강남순환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0.11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77.06%, 모든 차종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중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067. <sup>48</sup>	1,814. <sup>72</sup>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77. <sup>06</sup> %	
'00.11월 소비자물가지수*		63. <sup>66</sup>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sup>71</sup>	
2024년	산정통행료	1,890. <sup>09</sup>	3,213. <sup>16</sup>
	적용통행료	<b>1,900</b>	<b>3,200</b>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 【신월여의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2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6.34%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862. <sup>00</sup>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6. <sup>34</sup> %
'07.02월 소비자물가지수*		77. <sup>02</sup>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sup>71</sup>
2024년	산정통행료	2,724. <sup>93</sup>
	적용통행료	<b>2,700</b>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서부간선지하도로】**

-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07.7월부터 '23.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144.25%로 인상 대상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형
기준 통행료(실시협약)		1,923. <sup>66</sup>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44. <sup>25</sup> %
'07.07월 소비자물가지수*		78. <sup>13</sup>
'23.12월 소비자물가지수*		112. <sup>71</sup>
2024년	산정통행료	2,774. <sup>92</sup>
	적용통행료	<b>2,800</b>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

**3. 차종 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중형	16인승 이상 대형버스, 2축 이하, 2.5톤 이상~10톤 이하 화물차
대형	3축 이상, 10톤 초과 화물차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4.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

가. 면제 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구 분	면제 대상
유료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li> <li>○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li> <li>○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차량 중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li> <li>○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li> </ul>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구 제설차량(제설기간, 11.15~익년 3.15)</li> <li>○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li> </ul>

나. 감면 대상(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구 분	감면 대상	감면율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0%
전기자동차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	50%
장애인 차량	○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국가유공자 차량	○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5·18 민주유공자	○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비영업용 차량(시행규칙 제5조제4항)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다.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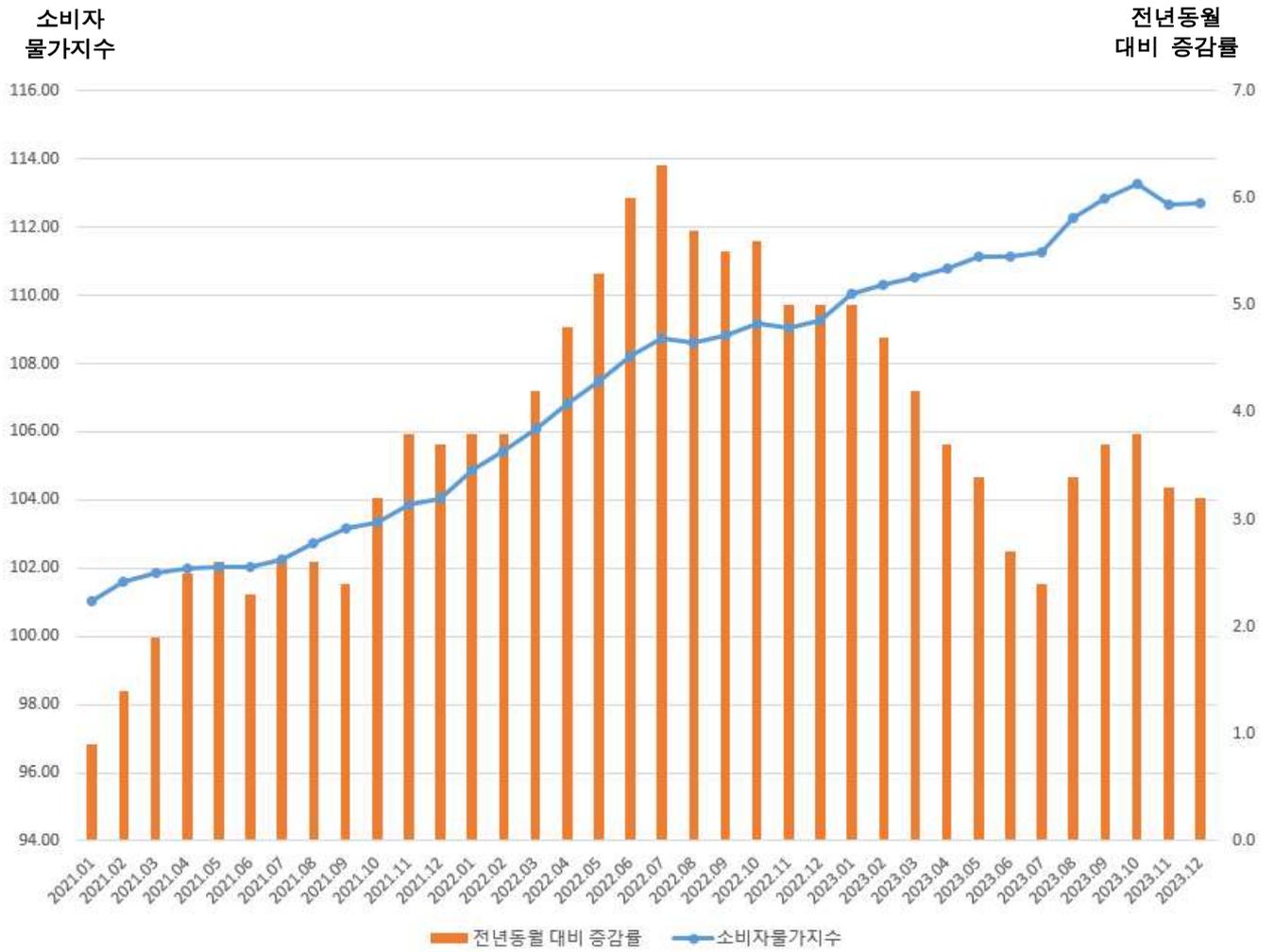
-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관리청	시설명	연장 (km)	통행요금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2.96	소형·중형 : 2,500원
경기도	수석~호평	11.2	소형 : 1,600원, 중형 : 3,200원 대형 : 4,000원
경기도	일산대교	1.84	소형 : 1,200원, 중형 : 1,800원 대형 : 2,400원
강원도	미시령터널	3.69	소형 : 3,400원, 중형 : 5,800원 대형 : 7,500원
대구광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 (앞산터널로)	10.44	소형 : 1,700원, 대형 : 2,400원
경상남도	마창대교	1.70	소형 : 2,500원, 중형 : 3,100원 대형 : 3,800원
경상남도	창원~부산	22.48	소형 : 2,200원, 중형 : 3,200원 대형 : 4,200원

※ 통행료는 2023.12.31. 기준임

## 6.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2023.12.